

내과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질의응답

문1

학술대회 초록 제1발표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 초록집 표지(학회명, 일자, 장소 표기 필수)와 수록된 초록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초록사본 페이지에 학회명, 일자, 장소가 명기되어 있는 경우 초록 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만 해당>

문2

제4조 2항의 15평점은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만 입니까? 학술대회도 포함됩니까?

(*제6조 1항은 학술대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분과전문의 1년 수련기간 중 10평점 이상의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각 분과위원회는 최소한 15평점 이상의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개설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연수강좌와 실습교육만 해당되고 학술대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3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 논문 제출 시 Letter, 임상화보 등도 논문으로 인정되는지요?

○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시에는 수련개시일로부터 응시자격 심사 전까지 총 1편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규정집에 명시(SCI, SCIE,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된 학술지(원저, 증례, 종설)에 투고 및 게재된 논문만 인정됩니다.

문4

논문평점 계산 방법은?

○ 논문평점은 분과규정집 별표2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만 해당>

구분	인정평점
논문 (원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단독: 10평점 • 2인 공저: 7평점 • 3인 공저: 5평점 • 4인 공저: 3평점 * 공저인 경우 제1저자 및 교신저자: 2평점 가산
논문 (종설 및 증례보고)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
예) 4인 이상 논문 1저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저: 4인 이상 3평점, 1저자 2평점 포함하여 5평점 인정 • 종설 및 증례: 50%인 2.5평점 인정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질의응답

문1

전임의 수련 시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동시수련을 금지시킨 것인지 또는 2개 분과 이상의 전임의 수련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 제9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 제1항의 타 분과의 중복수련금지는 동시에 2개 분과 이상의 전임의 수련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 응시자격 제1항에 의거 1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수료 후 1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단, 전공의 수련 3년제의 소화기분과 수련기간은 2년)만이 응시자격이 있으므로 실무기간 중 타 분과의 전임의 수련을 받는 경우도 중복수련에 해당하여 실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응시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문2

개업을 하다가 분과전임의 수련을 받고자 하는 내과전문의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제9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을 취소한 후에 수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3

군복무를 국군통합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군통합병원도 전임의 수련병원으로 지정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군복무 중 정규수련을 마칠 수 있는지요?

- 제11조 제2항 관계 <별표 5>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합당할 경우 국군통합병원도 전임의 수련병원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군복무 중 전임의 수련은 제9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에 의거 국방의무로 복무중인 자는 전임의 수련을 받을 수 없으나, 국방의무가 아닌 장기 복무 시는 가능합니다.

문4

대학병원에서 전임의 수련기간 중 4개월을 전임의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분원에서 파견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규수련 1년을 마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제6조 수련과정 제2항 관계 <별표 4> 수련내용에 명시된 타과 파견 이외의 비교육적 파견근무는 수련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리위원회에 보고된 수련병원 교육지도자가 장기 해외 연수나 근무처 이동 등으로 수련병원에서 장기간 근무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전임의의 수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5

군제대 후 5월부터 수련을 시작한 전임의는 다음해 4월말까지 수련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속 수련병원의 인사규정상 매년 3월 1일을 신규 또는 근무연장일자로 시행하고 있어 2개월을 더 근무하기 위해 3월에 다시 수련연장신청을 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요?

○ 군 제대 후 내과전공의 수련을 받는 경우와 같이 운용이 가능합니다.

문6

전임의 수련 시 출산 및 병가로 인한 휴가기간은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출산 및 병가로 인한 휴가 기간은 해당 병원의 규정에서 정한만큼 내과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합니다.

문7

전임의 수련기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수련기간 이외의 수련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분과전임의 수련 기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로 규정집에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병원의 전임의 정원과 사유를 관리위원회에서 검토 후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 및 갱신에 관한 질의응답

문1

'94년 2월 내과전공의 과정 수료 후 군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여 1년 뒤 재검을 받아 '95년 2월 군 신체검사에 합격하여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98년 4월에 제대하여 신생 대학병원 알레르기 내과 전임강사로 발령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 군 제대 후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의 해당 내과에서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1년 및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후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문2

'95년 2월 내과전공의 과정 수료 후 군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여 내과분과전문의 정규수련(1년)을 받고 '96년 2월 군 신체검사에 합격하여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 의무 군복무 기간도 실무종사에 해당되므로 '97년 7월에 실시되는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문3

'95년 내과전문의 취득 후 내과분과전문의 정규수련(1년)을 받고, '96년 3월부터 1년간 해외연수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해외연수가 실무로 인정되어 '97년 7월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요?

㉠ 해외연수기간도 실무종사에 해당되어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문4

현재 수련병원에서 호흡기내과 분과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에 따라 감염내과 분과전문의도 취득하고 싶은데, 두 가지 분과전문의를 모두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새로 취득하고자 하는 분과에서 수련 이수 및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여 자격인정시험에 합격한 경우 2가지 이상의 분과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5

내과분과전문의 자격갱신 시 만 60세 이상은 평점 취득 및 갱신관련 의무를 면제한다는 규정에서 만 60세 이상 회원이 자격갱신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 인정기간 마지막 연도 8월에 온라인 자격갱신 신청서(별지 제13호)만 제출하시면 자격갱신이 가능합니다.